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서 발표

- 8대 원칙과 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담아 -

개인정보위는 2024. 10. 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발표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2023. 8. 23. 발표하였던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안내서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바디캠, 배달로봇 등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AI학습·사고 원인 기록 등을 위해 이동 중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안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비례성·적법성 등 8대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입각하여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촬영·이용·보관·파기 등과 상시 보호조치 단계까지 각 처리 단계 별 준수·권고 사항을 좇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관련 기술이 그 특성 상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의 규제 방향 등도 계속 변화를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개정 동향과 개인정보위의 입장 변화 등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 10. 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2023. 8. 23. 발표하였던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안내서로, 2023년 9월 개정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던 내용에서 벗어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최근 드론·자율주행자동차·배달로봇 등의 새로운 기기가 등장 및 발전하고 이들의 이동 과정 중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런 영상정보 자체가 사생활을 위협한다는 비판에 더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자율주행 시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영상정보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꼭 신기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애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촬영·바디캠 등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자율주행 AI가 이동 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만큼, 안내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문 전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원칙

안내서는 우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8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례성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적법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수집·이용 등)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투명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책임성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적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통제권 보장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안내서는 위 8대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상시 보호조치 단계까지 단계별로 그 준수·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기획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근거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촬영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동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 및 설계</p>	<p>③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한 경우</p> <p>- 그 외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관리방침 작성 등 필요</p> <p>•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 명확화</p> <p>-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은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영상정보 범위 설정 및 책임 소재 명확화 가능</p> <p>•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및 합리적 초과 여부 판단</p> <p>- 위 ②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촬영 가능</p> <p>- 영상 촬영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수준의 권리침해라 보기는 어렵고, 촬영 목적과 수단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지 판단 필요</p> <p>- 업무 목적과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의 상당한 관련성,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기기 운영자가 그 근거의 입증책임 부담</p> <p>•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 <p>-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설계 필요</p> <p>- 설계 과정에서 식별된 위험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촬영(수집)</p>	<p>• 사생활 보호</p> <p>-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는 기기로 사람이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물 촬영 불가</p> <p>- 일반적으로 촬영의 거부가 예상되는 헬스클럽, 찜질방 등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은 제한될 필요</p> <p>• 촬영 사실의 표시</p> <p>- 기기를 이용해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함</p> <p>- 촬영 사실 표시 후 정보주체가 영상 촬영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음</p> <p>-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상 이유로 문자·그림·LED 불빛 등 이용, 드론은 개인정보위 운영 웹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등을 공지, 바디캠은 운영자 복장을 통해 표시하는 등 기기마다 그 특성에 맞게 촬영 사실을 표시</p> <p>• 가능한 한 익명·가명 처리</p> <p>- 가급적 업무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익명·가명 처리 바람직</p> <p>• 정보주체의 촬영 거부 의사 존중</p> <p>- 정보주체가 기기 운영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시, 촬영 중단 또는 영상 삭제 필요</p> <p>-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고속 이동하며 영상을 촬영하므로, 거부 의사 파악이 어렵고 의사 수용을 위해 갑작스러운 촬영중단도 어려우므로, 주행 완료 후 꼭 필요한 영상을 제외하고는 삭제하고, 익명·가명처리 적극 수행 바람직</p>

<p>이용 및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를 적용하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기 촬영 영상을 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 추가적 이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 이용·제공 가능(예: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안전 주행을 목적으로 영상 촬영 중 교통사고 등 발생하여 사고 원인 파악 및 보험처리 등을 위해 보험사에 영상 제공 시)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목적을 위해서는 가명 처리 후 활용 가능 - 가명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필요 - 개인정보위는 가명 처리로 인해 자율주행시 등의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도입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영상데이터 원본활용 허용 중 • 처리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p>보관 및 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책임자 지정 등 운영관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처리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겸직하거나, 별도 임명 가능하며 별도 임명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요건 미적용 • 보유기간 설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영상정보를 보유할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는 가급적 구체적 기간 산정이 바람직하며, 보유기간 연장 시 그 근거를 운영관리방침에 공개 필요 • 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율주행자동차·로봇 등은 방침에 접근가능한 인터넷 주소 또는 QR코드 표기 권고 •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 만료, 처리목적 달성 등 사유 발생 시 개인영상정보 파기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보존하라고 규정할 시 분리보관
<p>상시 보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확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영상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교육 실시 - 특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마련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운영관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3. 시사점

2023년 9월 개정 이전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면서 해당 공백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면이 많아 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안내서의 발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가 활용되는 자율주행 AI 등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또 어떤 신기술이 등장하여 새로운 법령과 관련 해석을 요할지는 지속적 주의를 요하므로, 개인정보위의 추후 행보에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 목적상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촬영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각 사업자는 관련하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v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voonyang.com

이수경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132

E. sgvi@voonyang.com

정호선

변호사

T. (+82) 2 6182 8548

E. junghs@v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v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voonyang.com